

■ 최신 법령 ■

[자본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희석 변호사

1. 주요 내용

2015년 7월 24일에 공포되어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일부 조항은 즉시 또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자본시장법')을 통하여 사모펀드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모펀드 제도 개정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Hedge Fund)를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명칭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바꾸고 설립 및 재산운용에 대한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개정의 취지를 시중 부동산자금의 원활한 흐름 촉진과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통한 외국자본의 대항마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제도의 개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1) 복잡·다기한 현행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하여 사모펀드 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함.
- (2)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함.
 - 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 진입규제를 종전의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여 역량 있는 운용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나)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규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여유자금 운용규제를 완화하여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는 별도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이도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3)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계열사 지원을 제한함.
- 가) 사모펀드 차입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펀드의 '재산'에서 '순자산'으로 전환하여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펀드 재산의 부실화와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펀드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하게 하여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사모펀드 재산 유용 및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산 인출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 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우회 지원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되, 공개 시장에서의 거래 등 투명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 (4) 금융주력그룹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인수·합병의 주체로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기존 계열회사 간의 지분 거래 제한 등 보완장치를 마련함.

지난 2004년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모펀드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모펀드 제도를 대폭 개정하고 사모펀드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그간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사모펀드 제도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